

# 귀하는 예측 가능한 근로 일정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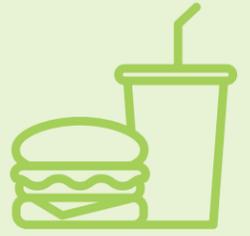
뉴욕 시의 Fair Workweek Law(공정 근로주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업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인에게 예측 가능한 근로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각 뉴욕 시 작업장마다 고용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 법의 보장을 받는 패스트푸드 근로자

뉴욕 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 중 최소한 하나를 수행하는 고용인:

- 고객 서비스
- 조리
- 음식 또는 음료 준비
- 외부 배달
- 보안
- 물품 또는 장비 재고
- 청소
- 정기 유지보수 작업

**이 법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처벌하거나 벌칙을 부과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고용인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이 있을 시 근로자는 즉시 OLPS에 이를 알리십시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권리



### 예상 일정 및 첫 근무 일정

근무 첫날이나 전에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반드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첫 2주에 대한 서면 일정(시간 수, 날짜, 시작 및 종료 시간, 근무 교대 장소 포함).
- 서면 “선의성실에 따른 근로 견적”(고용 기간 동안 예상되는 근로 시간대, 시간 수, 장소) 이 근로 견적 내용이 바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갱신한 근로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 2주 전 근로 일정 고지

고용주는 반드시 일정에 따른 고용인의 첫 교대근무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서면 근로 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정서는 반드시 최소 7일로 구성되고 모든 교대근무의 날짜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에 변경이 생길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24시간 이내, 혹은 최대한 빨리, 이에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오픈 근무에 대한 우선권

새 고용인을 고용하기 전에 새로운 교대근무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 해당 정보를 고용인의 작업장에 게시하고 문자와 이메일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고용인에게 직접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뉴욕 시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교대근무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교대근무가 발생할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오픈 근무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 해당 작업장에서 이를 수락하는 근로자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관심을 보이는 다른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교대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현재 뉴욕 시 근로자 중 게시한 기한까지 교대근무를 수락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Clopening” 근무에 대한 \$100 추가 지급 동의

고용주는 고용인의 첫 교대근무가 하루의 마지막이고 교대근무 사이 시간이 11시간 미만일 경우(소위 “clopening”), 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또한” 해당 교대근무에 대해 추가급료 \$100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고용인에게 2일에 걸쳐 2회의 교대근무 일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급박한 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 및 추가급료

고용주는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인의 일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지 기간	추가 근로시간 또는 교대근무 수	교대근무에는 변경이 없으나 총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을 때	줄어든 근로시간 또는 교대근무 수
14일 미만 전 고지	변경건당 \$10	변경건당 \$10	변경건당 \$20
7일 미만 전 고지	변경건당 \$15	변경건당 \$15	변경건당 \$45
24시간 미만 전 고지	변경건당 \$15	변경건당 \$15	변경건당 \$75

### 추가급료 지급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1. 고용주가 근로자 안전 혹은 고용주 재산에 대한 협박, 공공 서비스 장애, 대중교통 운행 중단, 화재, 홍수 혹은 기타 자연재해,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로 인한 휴업.
2. 고용인이 특정 교대근무에 대한 일정 변경을 요청할 때.
3. 고용인이 다른 고용인과 교대근무를 바꿀 때.
4. 고용주는 변경된 교대근무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노동정책과 기준 사무소(Office of Labor Policy & Standards, OLPS)는 Fair Workweek Law와 기타 뉴욕 시 근로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OLPS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nyc.gov/dca](http://nyc.gov/dca)로 이동하거나 311번(뉴욕 시 외는 212-NEW-YORK)에 전화 후 “Fair Workweek Law”를 요청하십시오. OLPS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OLPS는 조사를 완수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할 것입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OLPS 민원 제기와 법원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OLPS 연락 방법

[nyc.gov/dca](http://nyc.gov/dca)를 방문하거나 [FWW@dca.nyc.gov](mailto:FWW@dca.nyc.gov)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311번에 전화 후 “Fair Workweek Law”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고용주는 DCA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반드시 해당 작업장 근로자의 최소 5%에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일차언어로 이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